

‘26. 7.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벽 골 제 아 리 랑 사 업 소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2026-57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폐지이유

-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총 9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위원회의 전공 분야가 아닌 특정사안에 대해 자문이 어려워, 위원회와 별개로 관련 전공분야의 국가유산청 및 전북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에 별도 자문을 추진하여 개최 실적이 없음.
- 또한, 국가유산청 사업수행지침에 따라 벽골제 관련 사업 추진 시 본 위원회가 아닌 관련 전문가의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본 위원회의 자문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부

- 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부
- 마.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아. 입법예고 기간 : 2026. 3. 9. ~ 3. 30.(21일간)

4. 따로 붙임

- 가. 폐지조례안
- 나.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 다.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마. 참고자료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운영사항
 - 국가유산청 사업 추진 관련 사업수행지침 발췌본
- 바. 현행 조례
- 사. 방침결정문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벽골제아리랑사업소-2405

제 목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른 부서이견
조회 결과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1194(2026.3.9) 호와 관련,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른 부서이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회기간 : 2026. 3. 9. ~ 3. 19.(11일간)
2. 조회방법 : 공문발송
3. 조회내용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한 취지설명 및 의견수렴
4. 조회결과 : 의견없음. 끝.

2026. 5. 14.

주무관

김형서

학예연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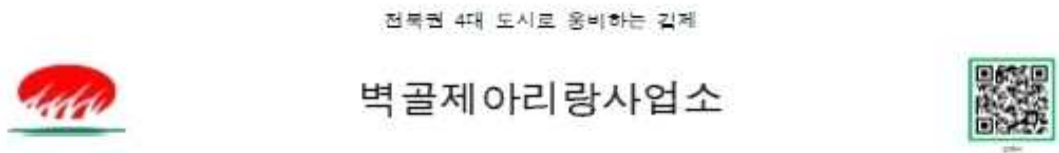
연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

정숙영

첨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1194(2026.3.9)호와 관련,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3. 9. ~ 3. 30.(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4. 입법예고 결과 : 이견없음. 끝.

주무관	김형서	학예연구팀장	연구	관리팀장	대결 2026. 4. 1.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전결
협조자					형실근	업소장
시행	벽골제아리랑사업소-1624			접수		
주	5442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광면 벽골제로 442			/ http://www.ginje.go.kr	
전화번호	063-540-4996	팩스번호	063-540-4999	/ kinhsso@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희도시 김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7004(2026.5.21.)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자 : 2026. 5. 21.(목)
2. 방 법 : 전자심의
3. 참석위원 : 9명
4. 심의안건 : 3건(조례 2,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3건

연번	심의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3건 (조례 2, 규칙 1)			
1	2026-18	기획감사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1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김제시 2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안	원안가결
3	2026-20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기획감사실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전결 2026. 5. 22. 이명호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7015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kirus@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획도시 김제

문서관리카드기획감사실-7015 2/2

□ 참고자료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운영사항

1. 조사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1년 조례 제정

○ 위원회 구성

구 분	인 원	위 원 구 성
합 계	15명	- 당연직 1, 위촉직 14
당연직	1명	- 위원장 : 시장
위촉직	14명 이내	- 문화유산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원회 기능

- 벽골제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심의
- 벽골제 발굴 유구·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 진행 방향 자문
- 벽골제 발굴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벽골제 학술적 가치 검토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방향 제시
- 그 밖의 벽골제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2. 위원회 개최현황

○ 김제 벽골제 조사위원회 9회 개최(심의 1건, 보고 및 자문 8건)

개최연도	회의 내용	비 고
2011	벽골제 발굴조사 기관 선정 심의	심의
2013	벽골제 발굴조사 현장설명(중심거) 및 자문 용수로 이설 추진상황 설명 등	보고 및 자문
2014	벽골제 발굴조사 추진현황 보고 및 자문 용수로 이설 추진상황 설명 등	
2015	벽골제 발굴조사 현장설명(중심거, 용골마을) 및 자문	
2016	벽골제 발굴조사 현장설명 및 자문 박물관 사료집성 발간 및 세계유산 등재 관련 논의	
2018	벽골제 발굴조사 추진현황 보고 및 지형분석 자문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부결 현황 보고	
2019	벽골제 정밀실측 및 미확인 수문지 탐사용역 자문	
2020	용수로 정비방안 연구용역 보고 수여거 조사현황 보고	
2021	수여거, 유통거 조사현황 보고 및 자문	

※ 2022년 11월 조사위원 임기 종료 <붙임1. 조사위원회 위원명단>

3. 폐지사유

○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14년간 조사위원회 9회 개최

▶ 1차 회의 발굴조사기관 선정 심의 이후 보고 및 자문회의로 운영

○ 위원회 조사위원 전공분야가 다양하여 개별사안에 대한 자문 한계

▶ 조사위원회와 별개로 국가유산청 및 전북도 문화유산위원 중 관련 분야
위원으로 사안별 자문 추진

○ 국가유산청 사업 시 사업수행 지침으로 관계전문가 자문 수행 필수

▶ 조사위원회 개최로 인한 중복 자문 불필요

붙임1. 조사위원회 위원명단 ※2022년 당시 직책

소 속	직 위	성 명	관련 분야	비고	직 무
김 제 시	시 장				위원장
김 제 시 의 회	시 의 원				
공 주 대 학 교	교 수	김 종 진	문화재	前 문화재청장	위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문 이 화	문화재 활용	現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목 포 대 학 교	교 수	최 성 락	고고학	前 문화재위원	
고고문화연구소	소 장	조 현 중	고고학	前 국립광주박물관장	
전 주 문 화 원	원 장	나 종 우	역사학	前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원 광 대 학 교	교 수	홍 승 재	고건축	現 문화재위원	
전주교육대학교	교 수	김 주 성	한국사	現 전라북도 문화재위원	
전 북 대 학 교	교 수	남 해 경	건축	現 문화재위원	
호 남 대 학 교	교 수	김 민 환	토목	現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남 욱 현	자연과학		
前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이 문 현	문화유산		
전통문화연구소	소 장	공 준 원	지역학		
충 남 대 학 교	교 수	허 수 열	경제학		

□ 참고자료 : 국가유산청 사업 추진 관련 사업수행지침 발췌본

함께 혁신, 함께 성장,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사업 추진계획 및 지침 알림

1. 국가유산청 기획재정담당관-293호(2026.1.27.)와 관련입니다.

2. 2026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및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의 사업추진계획 및 지침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추진 시 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2026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사업 추진계획.
2. 2026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공통지침.
3. 2026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세부사업지침.
4. 2026년도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세부사업지침. 끝.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사인

수신자 전주시장(국가유산관리과장), 군산시청(문화예술과장), 익산시청(문화유산과장), 정읍시장(문화유산과장), 김제시장(문화관광과장), 남원시장(문화예술과장), 관광시설과장, 완주군수(문화역사과장), 진안군수(문화체육과장), 무주군수(태권문화과장), 장수군수(문화체육과장), 임실군수(문화체육과장), 순창군수(문화관광과장), 고창군수(문화예술과장), 부안군수(문화예술과장), 김제시장(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주무관 송귀별 유산보존팀장 노수환 유산관리과장 전결 2026. 1. 28. 이상철

협조자

시행 유산관리과-1508 (2026. 1. 28.) 접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463 (2026. 1. 28.)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6 (효자동3가)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4846 팩스번호 063-280-2639 / ggy20@korea.kr / 대국민 공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2026년도 국가유산보수정비(일반) 사업 세부사업지침

순번	시도	소관	지정종류	국가유산명	지침내용	예산액(단위:천원)			세부사업지침	소관부서
						국비	지방비	계		
785	전북	김제시	사적	김제 읍산사 일침	전각 지붕 및 담장 보수 설계	42,000	18,000	60,000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각 지붕 및 담장 보수 등 설계를 실시한다	역사유적정책과
786	전북	김제시	사적	김제 읍산사 일침	전시영상 제작	343,500	343,500	687,000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전시시설 영상을 제작한다	역사유적정책과
787	전북	김제시	사적	김제군 편아와 창고	외삼문 복원 설계	210,000	90,000	300,000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외삼문 복원 및 주변정비를 위한 설계를 실시한다	역사유적정책과
789	전북	김제시	사적	김제 벽골제	발굴지 정비	140,000	60,000	200,000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 원형지의 정비를 실시한다	역사유적정책과

□ **현행 조례**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12.26 조례 제 777호
(일부개정) 2013.01.29 조례 제 819호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8.19 조례 제 856호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09.17 조례 제1425호
(일부개정) 2024.05.08 조례 제1648호
(일부개정) 2025.04.01 조례 제174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지 벽골제의 효율적인 보존, 발굴 및 조사를 위하여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김제시벽골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벽골제 발굴·조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와 제안을 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벽골제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기관 심의
2. 벽골제 유구·유적 발굴 필요성 검토
3. 벽골제 발굴 유구·유물의 학술적 검토 및 조사 진행방향에 대한 자문
4. 벽골제 발굴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5. 벽골제 학술적 가치 검토 및 국제학술회 개최
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방향 제시
7. 그 밖에 벽골제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24.5.8.>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학술적 검토와 기술적 검토 등 분야별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사망, 질병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벽골제조사연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1.29., 2021.9.17., 2025.4.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819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홍보축제실 벽골제개발담당”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연구개발담당”으로 한다.

부칙<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 5. 8.>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문서번호	996	주무관	팀 장	소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 재
보존기간	10년	김형서	조혜정	정숙영	유한기	이현서	김성근	
결재일자	2026. 2. 27							
공개여부								
		협 조	기획감사실장 이/46호 의회법무팀장 이/46호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계획(안)



김 제 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